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  
심사보고서

1995. 9. 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4.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95.8.31)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목 부과과장)

가. 제안이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세(면허세, 사업소세)를 감면코자 함.

나. 주요골자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자(업체)에게 '95년 8월납기 정기분 사업소세(재산할)와 삼풍사고로 인하여 면허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허세를 면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95.7.19. 그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95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사업소세(재산할)와 재해로 인한 면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세제지원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김성환위원) : 마포구민으로 실제피해자 현황은?
- 답변요지(이영목 부과과장) : 사망자 7명, 부상자 17명으로 총 24명임.
- 질문요지(이인구위원) : 피해자에 대한 면세세액은 총 얼마나 되는가?
- 답변요지(이영목 부과과장) : 세금면제확인서를 접수받아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95.9.30일까지 접수를 마감

하는데 현재까지 한 건의 신청도 없으므로 총 면세세액을 추정할 수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

의안번호	17
------	----

제출년월일 : 1995.8.23.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출사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세(면허세, 사업소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함.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

3. 주요내용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자(업체)에게 '95년 8월납기 정기분사업소세(재산할)와 삼풍사고로 인하여 면허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허세를 면제함.

4. 구세과세 면제내역

- 사업소세(재산할)
  - 재해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업장에 부과되는 '95.8월납기 정기분 사업소세(재산할)
  - 사업소세(재산할) : 330㎡이상의 사업장으로 1㎡당 250원
- 면허세(수시분)
  -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업체등)가 피해로 인하여 면허의 변경·이전등의 사유발생에 따른 면허세(수시분)
  - 면허세(1종~5종) : 12,000원~45,000원
- 관련지방세법규정(발취) : 별첨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0조(정의) ①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 제164조(세율) ①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분	인구 50만이상시 및 자치구 아년구가 설치된 시	기 타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94.12.31. 신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9. 4.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8.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2.

다. 상정일자 : 제33회임시회 제6차위원회('95.9.4)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재형 건설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1994.9.16. 대통령령 제14382호)개정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마포구 행정권한위임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점용허가 등의 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삭제하며,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